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① 고시금액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②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1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의 정밀안전진단 포함)	③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④ 30억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	비 고	
계	100	100	100	100		
당해 사업수행능력	배점범위	30	70	80	80	
	심사항목	부표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따른 발주청 평가기준 적용			
입찰가격	배점범위	70	30	20	20	
기타 당해 사업수행관련결격사유	△20점	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공사 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점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비고

1. 입찰가격 평점산식(|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평점(점)=70-20× | 90/100-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65점 적용

- ② 평점(점)= $30-2 \times |90/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25점 적용
 - ③ 평점(점)= $20-2 \times |90/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 이상인 경우는 평점 10점 적용
 - ④ 평점(점)= $20-2 \times |90/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7.5% 이상인 경우는 평점 5점 적용
2.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당해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 28조의 절차에 의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규정한 세부평가사항, 배점 범위, 평가기준·방법 및 가·감점 사항 등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적격심사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수행능력 결정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낙찰자 통보일로 한다.
4. 적격심사결과 가·감점을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